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국비:시비=50:5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재를 해체·
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면적에 따라 최고 3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